

수산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감면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김 기 성 부연구위원

빈

면

머 리 말

농림수산 관련 제도 중에서 조세제도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분야이며, 수산분야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는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어민의 소득세·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을 통해 어민의 소득을 지지하고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UR 협상 타결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이러한 조세 감면 등을 통한 지원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관련 세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은 물론 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응하며, 새로 출범한 WTO 체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농수축산 부문의 조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1992년 「농업조세에 관한 연구」와 1993년 「임업 및 축산조세제도」에 뒤이은 연구 성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산 조세의 체계 및 관련 세법, 그리고 감면세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검토했으며, 기존 감면세제와 UR협상 타결 결과의 합치성 여부를 음미하면서 감면세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세제개선안 중 일부는 수산업의 육성 또는 어민의 지원 측면에 주된 초점을 둬으로써 UR 협정과의 일치 등의 측면에 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점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수산 분야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물론 UR협상 결과의 이행과 OECD 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수산분야 감면세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책 입안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5.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	4
4. 주요 용어의 정의.....	4

제 2 장 수산조세의 실태와 조세체계 및 법제개요

1. 주요 세목과 조세체계.....	6
2. 수산조세의 담세실태.....	9
3. 수산조세의 법제개요.....	11

제 3 장 수산조세의 감면 현황

1. 조세감면의 법령과 유형.....	32
2. 수산 국세의 주요 세목별 감면 현황.....	36
3. 수산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감면 현황.....	48

제 4 장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개선 방향

1. 수산 감면세제도 개선의 전제.....	52
2. 수산 감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3
3. 세법구조 및 기타 행정체계상의 유의점.....	64

제 5 장 결 론..... 68

부록 1.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업’의 세부내용.....	73
----------------------------------	----

부록 2.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물가공업’의 세부내용.....	75
-------------------------------------	----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어민의 세목별 담세빈도	9
표 2-2	수산업 형태별 담세빈도	10
표 2-3	미가공 식료품중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산물	16
표 2-4	수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17
표 2-5	인지세의 과표와 세율	18
표 2-6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관세율	20
표 2-7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22

제 3 장

표 3-1	농특세에서의 '특정조세의 감면' 내용	45
-------	----------------------------	----

제 4 장

표 4-1	수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확대 대상품목	54
표 4-2	영세율 미적용 영어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부담 추정액 규모, 1994	54
표 4-3	육상양식어업용시설 현황, 연간 유류 소요량 및 담세액 추정	56
표 4-4	어민후계자 육성 및 지원 실적	58
표 4-5	관세 경감대상 농기계 부분품	60
표 4-6	UR 금지보조금중 수산조세 지원부분	61

도 목 차

제 2 장

도 2-1 조세체계상 수산 관련 조세의 위치 8

도 2-2 수산 관련 세법의 법률체계 12

제 4 장

도 4-1 수산조세의 행정체계와 조직 67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수년간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수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여건의 악화¹⁾와 수산물 수입의 완전개방 등 국내외 상황 변화는 漁民, 漁家の 상대적 소득수준 감소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체제를 맞이하여 수산경제활동에의 합리적 정부 지원을 통한 어가소득 補塡이 당면 水産政策 課題중의 하나이다.

生産費를 줄이고,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 등에 소요되는 제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정부차원의 수산 지원책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일환책으로 租稅의 接近이 가능하며, ‘水産租稅制度에 관한 研究’

1) 수산자원의 감소, 취업인력의 부족, 원양출어조건의 열악화 등.

는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WTO체제하에서 예상되는 漁家, 漁民의 상대적 소득 감소분을 補填하고, 수산업 내지 어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寄與할 수 있는 수산 관련 減免稅制度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범위

2.1.1. 연구대상

이 연구는 水産人 즉, 漁家, 어민,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부과되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률 제도²⁾ 등을 主對象으로 한다.

2.1.2. 수산업의 범위

이 연구에서 수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³⁾체계상 '대분류 1, 중분류 13, 소분류 130(수산업)'에 해당하는 수산업⁴⁾ 중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4호의 수산업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1호에 규정한 제조업

2) 조세감면의 범위는 관련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조세를 비과세, 소득 공제, 세액면제, 세액경감, 세액공제, 세율특례 및 영세율 적용 등의 형식에 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한한다.

3)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1984.1.26).

4) '중분류 13, 소분류 130'의 수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바다, 강 또는 호수에서 선박 및 어도구 등으로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採捕, 채취, 양식 또는 증식하는 산업활동과 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부록 1 참조).

(‘음식료품’ 중 수산식료품)을 포함한다⁵⁾.

2.2. 연구방법

2.2.1. 방법론적 접근

수산 관련 조세는 복잡한 사회현상의 하나이므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제도적·규범적 접근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2.2.2. 세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분석

(가) 실체법중 소득세법, 관세법 등 11개 국세 관련 세법(13개 세목 규정)⁶⁾과 등록세 등 10개 세목을 규정한 지방세법 및 절차법중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수산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나) 자산재평가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외자도입법, 노무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중기관리법, 수산업법 등 수산조세와의 간접 관련 법규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다.

2.2.3. 현지 사례조사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 등 어업의 법정 형태별 담세사례조사를 통하여 관련 조세의 과징실태를 파악, 세법의 현실 적용성 파악에 참고하였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4호의 ‘수산업’에는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수산서비스업,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의 냉동 판매업,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 염장 등 원시 가공업과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어촌지역에서의 원시가공업 등이 포함된다.

6)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인지세법,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교육세법,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등.

2.2.4. 관련 통계 및 문헌 분석

수산청, 수협 중앙회, 수산진흥원 등의 관련 통계와 연구자료 등을 분석 검토하고,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다.

3.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관련 연구가 있어⁷⁾ 그 시대 수산세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당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그 시점에서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후 10~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개선을 요하는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國內 稅制의 전반적인 개편이 累次 있었음에도 격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적 여건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였으며 특히, WTO체제에 대응할 稅制 補完의 불가피성을 시사하고 있다⁸⁾.

4. 주요 용어의 정의

4.1. 수산인(개인 및 법인)

어가⁹⁾, 어민, 수산 관련 기업 및 단체

7) 김인태(1973), 주우일(1981) 등.

8) 수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등은 보완을 요하는 대표적 예이다.

9) 농경연 연구보고 279,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1993.12, 옥영수) 참조.

4.2. 수산제조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1호에서 정하는 음식료품(수산통조림 등 수산식료품)의 제조업

4.3. 수산조세

이 연구에서 ‘수산조세’란 수산업을 포함한 각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세 중에서 수산부문에 관련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농업에 대한 순수한 조세로 ‘농지세’가 있는 것과는 달리 오직 수산업 자체에만 연관되는, 과거의 ‘어업세’와 같은 수산부문 고유의 수산조세는 없다.

제 2 장

수산조세의 실태와 조세체계 및 법제개요

1. 주요 세목과 조세체계

1.1. 주요 세목

현행 수산조세의 주요 세목을 과세 대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 어선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등기 등록된 어선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어업권 수산가공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와 상속 및 증여 등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및 증여세
- 일부 수산기자재와 일부 어업용 유류 등의 구입 및 수산물 판매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또는 특별소비세)

- 수산물 도소매업자와 중매인의 상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수산물 선박 등의 자산재평가액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 선박, 어업권 등의 소유권 이전 및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 수산 관련 재산세 등록세 등을 납세하는 수산인과 금융업을 하는 수협 및 그 중앙회 등에 대한 교육세
-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수산물의 국내 도착분 등에 대한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
- 선박, 어업권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 3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
- 수산업, 면허어업 및 수산제조업, 수산물시장 개설 및 어패류 경매업 등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 선박, 수산가공용 건물과 독크 및 조선대등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
-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용 토지의 소유에 대한 종합토지세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의 수도권 및 市級 이상 지역소재 사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세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수산인에 대한 소득할(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 20톤 초과하는 어선에 대한 소방시설 등에의 공동시설세
- 선박,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와 지적법상의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등에게 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액을 과표로 하여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지방세법 제235조의 2)

1.2. 조세체계상 수산조세의 위치

현행 조세체계상 수산조세의 위치를 조세분류기준¹⁾에 따라 하나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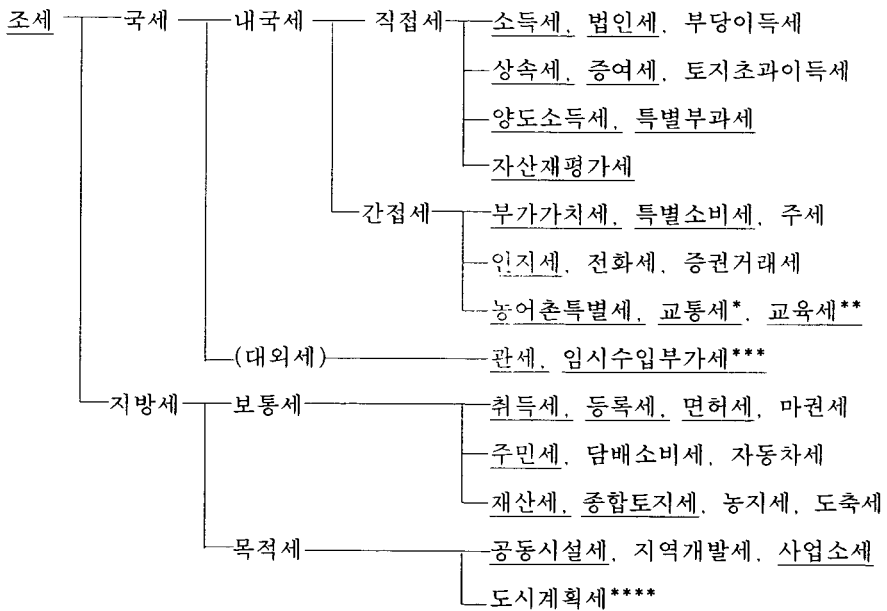
1) 조세분류는 그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기준에 따라 분류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34호(1986), pp. 5~10 참조.

결고리로 정리해 보면 (도 2-1)의 밑줄 그은 부분과 같다.

수산과 관련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 7개 세목은 국세중 내국세로서 직접세류에 속해 있고,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 5개 세목은 내국세중 간접세이며, 그중 농어촌특별세 등은 간접세인 동시에 목적세이다.

지방세중 수산조세는 대부분이 보통세로서 직접세임을 알수 있다

도 2-1 조세체계상 수산 관련 조세의 위치



* 교통세 도입 이후 어선용 휘발유 등에 특별소비세 대신 부과한다.

**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더불어 국세중 목적세로서 특별소비세, 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록세, 자동차세, 마권세,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와 금융 보험업자에게 부과한다.

*** 제도적으로 존치되어 있을뿐 아직 적용한 예는 없다.

****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구축물(수산 관련 독크, 조선대, 송유관 등)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자료: 현행 국세 관련 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작성(1995.8.31 현재).

2. 수산조세의 담세실태

2. 1. 어민의 세목별 담세빈도

사례조사에 의하면 납세 어민은 경험적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허세, 재산세 등이 다빈도 납부 세목으로 나타났다(표 2-1).

표 2-1 어민의 세목별 담세빈도

납세자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부가세	특소세	재산세	종토세	계
남영학	X			X	X	X	X	X	X	7
김휘곤		X	X	X	X	X	X	X	X	8
이근관	X	X	X	X	X	X	X	X		8
문병규	X			X	X	X	X			5
박만영	X	X	X	X	X	X	X	X		8
강철민	X	X	X	X	X	X	X	X		8
송영범		X	X	X	X	X	X		X	7
김성환	X	X	X	X	X	X	X	X	X	9
김춘희		X	X	X	X	X	X			6
신명식		X	X	X	X	X	X	X		7
강진기				X	X	X	X	X		5
최동욱	X	X	X	X	X	X	X	X	X	9
유의봉		X	X	X	X	X	X	X		7
빈 도	7	10	10	13	13	13	13	10	5	/

자료: 현지사례조사 결과(1994. 4).

2. 2. 수산업 형태별 담세빈도

수산업 형태별 담세 실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면허세,

표 2-2 수산업 형태별 담세빈도

세 목	해 면 어 업*					내 수 면 어 업			빈도 (8)
	양어	근안	연유	기권	근연	양식	투망	양만	
소 득 세		V	V	V		V			4
법 인 세			V	V	V	V			4
양도소득세						V			1
부가가치세	V	V	V	V	V	V	V	V	8
상속, 증여세	V	V						V	3
특별소비세	V	V	V	V	V	V	V	V	8
교 통 세		V	V	V	V				4
농 특 세									-
교 육 세	V	V	V	V	V	V	V	V	8
재평가세				V					1
인 자 세	V	V	V	V	V	V	V	V	8
관 세	V	V	V	V	V	V	V		7
재 산 세		V	V	V	V				4
종합토지세	V		V			V		V	4
공동시설세		V	V	V	V				4
사업소세		V	V						2
도시계획세	V	V	V	V	V	V		V	7
취득, 등록세	V	V	V			V	V	V	6
면 허 세	V	V	V	V	V	V	V	V	8
세 목 수	10	13	14	12	10	12	7	9	/

* 근안: 근해안강망, 연유: 연안유자망, 기권: 기선권형망, 근연: 근해연승.
 자료: 현지 사례조사 결과(1994. 5~11).

재산세 등이 다빈도 납부 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2.3. 수산인의 조세부담 실태와 담세의식

○ 현지 사례조사에서 파악된 수산인의 객관적 담세 수준은,

- 전반적으로 무거운 부담은 아니나 특정 세목에 한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수산인이 부담하는 조세의 세목 수가 많으며, 부과 징수의 형태도 다양하여 조세마찰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 등 법정 어업형태간에는 規模差에 따르는 담세액차 이외는 특기할 사항이 없다.
- 수산인의 주관적인 담세의식은,
 - 영세어민은 조세부담이 적어 수산조세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희박하다. 반면에 수산법인은 담세에 민감하여 감세와 절세의식이 강하게 잠재해 있다.
 - 시군, 세무관서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행태에는 불만이면서도 어쩔수 없이 수용하는 자세이다.
 - 조세행정에는 불신하면서도 거의 맹종과 타협이 반복되고 있으며, WTO체제에 임하면서 막연한 세제 지원과 기타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다.

3. 수산조세의 법제개요

3.1. 수산 관련 세법의 법률체계상 연결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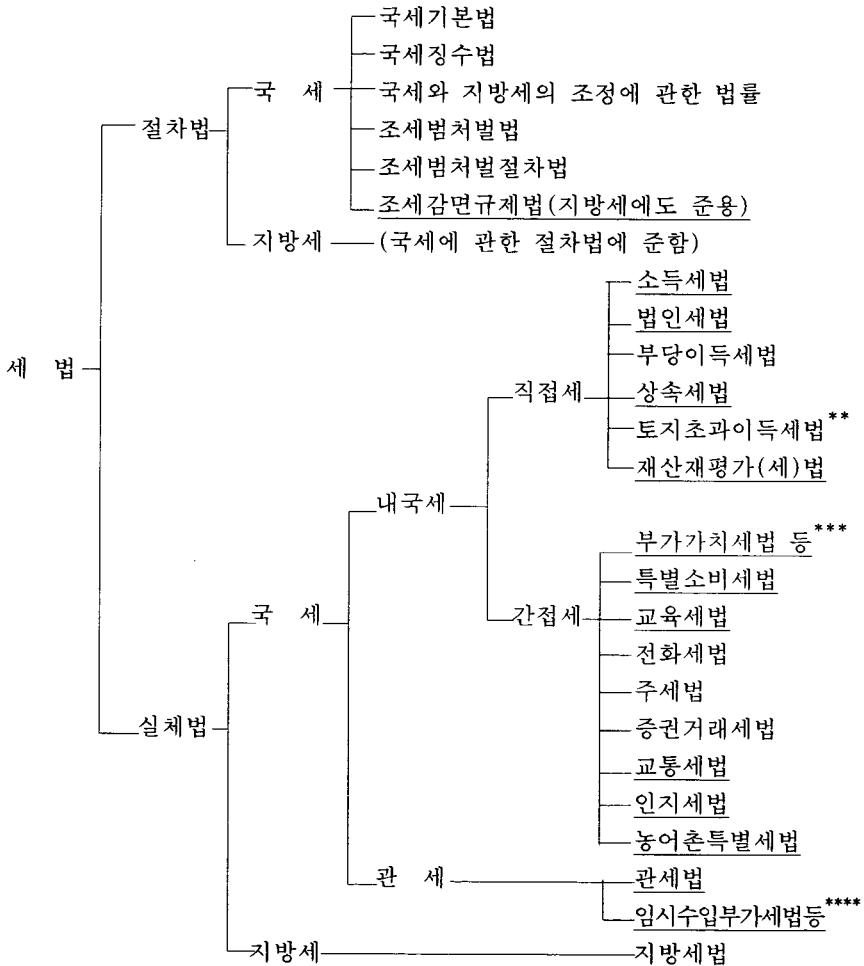
수산조세를 포함하는 모든 조세의 제도적 골격은 그들 조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체계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현행 수산 관련 주요 세법은 대략 (도 2-2)와 같은 법률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실체법과 절차법에 의거, 타부문 세법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실체법에 있어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 조세마다 고유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되고 있으며, 절차법의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요 실체법에는 소득세법, 상속세법, 농특세법, 지방세법 등 15개

법률이 있고, 주요 절차법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6개 법률이 있다.

도 2-2 수산 관련 세법의 법률체계*



* 절차법 전부와 실체법중 밑줄 친것이 수산조세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 '헌법불합치' 헌재판결(1994.)이후 改廢論이 계속중이다.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등 포함.

****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특례법' 등 포함.

자료: 조세 관련 제법률을 근거로 발췌, 재구성(1995. 8. 3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은 법체계상 절차법이면서도 조세의 감면부문을 전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실체법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2. 수산조세 법규개요

관련 실체법 전부와 일부 절차법 중에서의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관하여 각 법령별 수산 관련 사항을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1. 국세중 수산 관련 법규

3.2.1.1. 소득세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수산업, 수산제조업, 수산 도소매업 등의 소득과 어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소득 등에 종합소득 과세(소득세법 제1조, 제20조, 제25조)

(2)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복지후생성 급여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조 4호 '과' 목, 동법 시행령 12조의 2, 1항, 12조의 3, 1항 및 2항)

(3) 연근해 어선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조 4호 '하' 목, 시행령 12조의 3, 1항, 2항 및 3항, 시행규칙 제3조의 4, 2호)

(4) 수산 관련 토지 건물의 양도 등에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23조 1항 1호)

(5) 등기 등록된 어선의 대여로 얻는 소득(부동산소득으로 분류)에 종합소득 과세(소득세법 제4조, 19조)

(6) 600만원 이내 어가부업(양어)소득에 비과세(소득세법 제5조 3호)

(7) 어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에 종합소득과세(소득세법 제4조 1항, 25조 1항 7호)

3.2.1.2. 법인세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국내에 事務所를 둔 수산법인에게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제1조

제1항)

(2) 수산 관련 非營利 內國法人의 수산 수익사업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제1조 1항 및 2항)

(3) 수산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그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借入金 利子は 損金不算入(손금산입 불인정)(법인세법 제18조의 3. 1항 1호, 시행령 제43조의 2. 1항)

(4) 수협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법 등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損金算入(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3.2.1.3. 상속세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는 국내외의 선박, 어업권 및 입어권 등의 상속에 증여 상속재산 합산과세²⁾(상속세법 제2조 1항)

(2) 선박, 어장, 어업권 등의 증여에 증여세 부과(상속세법 제29조의 4)

(3) 수산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어선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이나, 수산업법에 의한 어장구역 99,000평방미터 이내의 어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5호 및 6호)

(4) 기타 상속세법 제5조(상속세 기초공제액),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31조(증여세 인적공제) 등

3.2.1.4. 資産再評價法(再評價稅)중 수산 관련 사항

(1) 선박 등을 사용하는 수산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법 제5조 1항 1호)

2)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단,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하여 부과한다.

(2) 선박 등 자산재평가³⁾ 者에 대한 재평가세 부과(법 9조)

3.2.1.5. 부가가치세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수산물의 공급과 외국선박으로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의 국내 인취 등 수산물의 輸入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

(2) 수출하는 재화와 외국항행 선박⁴⁾ 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 零稅率適用⁵⁾, 단, 연근해어선 제외⁶⁾(부가가치세법 11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등)

(3) 食用의 미가공 수산물(표 2-3)과 국산 비식용 수산물 등의 공급 및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세⁷⁾(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 9~11호 및 3항 등)

(4) 수협 어촌계 및 새마을 양식계 등(‘정부업무 대행단체’)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수협연쇄점, 직매장사업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동법 시행령 38조 1항 6호)

(5)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납세의무자), 동법 시행령 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3조(부가가치세의 과표), 법 제14조(부가가치세의 세율), 법 제24조(부가가치세의 환급) 등

3) 再評價라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帳簿價額을 增額하는 것을 지칭한다(자산재평가법 제2조).

4) 여기서의 선박에는 원양어선은 포함하나 연근해어선 등은 제외된다.

5) 면세는 면세대상의 매출단계에서 산출된 세액만의 면제일 뿐이나, 零稅率適用은 당해 매출단계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물론, 그 이전 유통단계에서 轉嫁되어 온 매입세액까지도 완전히 還給해 주는 것이다.

6) 연근해어선에는 별도규정(조감법)에 의하여 극히 제한된 수산기자재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7) ‘면세’가 去來의 중간단계에서 행하여질 경우, 前段階에서 정책적으로 면세된 부가가치세가 免稅次位段階로 전가되는 ‘면세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표 2-3 미가공 식료품중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산물

구 분	관세율 표 번 호	품 명
9 생선류	0301	활어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0303	냉동어류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0306	갑각류
	0307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0511	관세율표 제0511호 해당 물품중 어류웨이스트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 해당 물품중 조개 등 제패류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 해당 물품중 미역 등 해조류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별표 1.

3.2.1.6. 농축림어업용 기자재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⁸⁾중 수산 관련 사항

(1) 조감법 제99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의 정의⁹⁾(특례규정 제2조 3항)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표 2-4), (특례규정 제3조 6항, 동시행규칙 제3조)

8) 이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와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규정 제1조).

9) 조감법 제99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를 말한다(농축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제2조 3항).

표 2-4 수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㉑ 어망 ㉒ 부자 ㉓ 집어등(집어용 안정기 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 ㉔ 자동조상기 ㉕ 양망기 ㉖ 양승기 ㉗ 통발 ㉘ 초호 ㉙ 낚시 ㉚ 연승 ㉛ 발장
 ① 해녀용 잠수복, 잠수복지, 물안경 및 태와, ㉜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
 리프로 필렌로프(수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 ㉝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㉞ 선박용 무선전화기

* 농축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특례규정 제3조 제6항,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3.2.1.7. 특별소비세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휘발유 등(특소세 과세대상 제5종 제2류의 물품)이 원양어선
 등에 사용시 既納 특소세 還給(특별소비세법 제20조)

(2)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등에 특별소비세 비과세(특
 소세법 제2조 등)

3.2.1.8. 교통세법¹⁰⁾중 수산 관련 사항

(1) 교통세 과세물품과 세율 등: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는 물품
 가격의 150/100, 경유에는 물품가격의 20/100(교통세법 제2조)

(2) 어선, 수산업용 유류(휘발유, 경유)에 교통세 부과(교통세법 제
 3조){어선 및 기타 어업용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교통세법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3) 원양어선용 휘발유 등에 교통세액 환급, 공제(교통세법 제17조
 2항 4호)

10)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세법 제1조).

(4)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세 과세물품의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 납부 및 징수할 교통세액에서 특별소비세액 환급, 공제(교통세법 제17조 9항)

(5) 휘발유와 경유 등에의 특별소비세법 적용 배제(교통세법 부칙 제 9조)

3.2.1.9. 인지세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선박의 소유권 이전, 어업권의 양도, 수산업자의 채무보증 등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증서의 작성에 인지세 부과(인지세법 제1조)

(2) 수산관련 인지세의 세율은 어업권 등의 양도증서, 20톤 미만 선박의 양도증서 등에 3,000원 등 문서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함(표 2-5), (인지세법 제3조)

표 2-5 인지세의 과표와 세율

과 세 문 서	세 액
○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증서	기재금액 5백만원~1천만원: 1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부동산 전세권, 임대권증서 용선계약서 등	1만원
○ 어업권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 예금증서, 상호부금증서 등	100원

자료: 인지세법 제3조.

3.2.1.10. 교육세법¹¹⁾중 수산 관련 사항

11) 교육의 질적 향상에 요하는 교육재정의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수협 등 국내 금융업 영위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교육세법 제3조 1호)

(2) 어선, 기타 수산업용 유류(특소세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 2류의 물품)에의 특별소비세 납세자에 대한 교육세 비과세(교육세법 제3조 2호)

(3)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는 수산인에 대한 교육세 부과(교육세법 제3조 4호, 7호 및 8호)

(4) 수협 등 금융 보험업자의 신용사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 부과(교육세법 제5조)

3.2.1.11. 관세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국내선박으로 公海에서 채포된 수산물과 외국선박으로 공해에서 採捕된 수산물의 國內引取(:輸入)¹²⁾에 관세 부과(관세법 2조 1항~4항 및 제3조)

(2) 수산물의 수입과 외국산 船用品의 사용에 관세 부과(관세법 제6조)

(3) 수산양식 종자¹³⁾의 수입에 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 6,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4)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수입 수산물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조정 관세율 적용(관세법 제12조의 2, 제1항 4호)

(5)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표 2-6)¹⁴⁾, (관세법 제7조)

12) '輸入' 이라함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외국선박으로 공해에서 採捕한 수산물 등 포함)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13) 양식용 실탄장어, 종패용 진주조개, 진주양식용 핵 및 종패용 굴치패 등.

14)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한다(관세법 7조).

표 2-6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관세율

번 호	품 명	세 율(%)		
		1990년	1993년	1994년 이후
0301	활어	15	10	10
0302	신선 또는 냉장어류	20	20	20
0303	냉동어류	10	10	10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20	20
	냉동한 피레트	10	10	10
	기타	10	10	10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	20	20	20
0306	갑각류로서 껍데기 유무 불문	20	20	20
0307	연체동물			
	굴	20	20	20
	가리비과의 조개	20	20	20
	홍합	20	20	20
	갑오징어와 오징어	20	20	20
	문어로서 옥토푸스종	20	20	20
	달팽이	20	20	20
	기타	20	20	20

* 제1부 제3류.

자료: 관세법 제7조, 별표.

3.2.1.12. 임시수입부가세법¹⁵⁾중 수산 관련 사항

(1)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교역상대국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산물 등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할수 있음(임시수입부가세법 제1조 및 2조)

15) 수입물품에 관세 이외에 臨時輸入附加稅를 부과하여 국제수지를 개선코자 한 것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존치하고 있을뿐 실제로 부과한 예는 아직 없다.

(2) 관세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부가세법 제5조)

(3) 임시수입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부가세법 제6조)

3.2.1.13. 수출용 原材料의 관세 등¹⁶⁾ 還給에 관한 특례법중 수산 관련 사항

(1)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 등 부과(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제3조)

(2) 제조된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특례법 제5조)

(3)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제조 가공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세율 인하(특례법 제13조 1항)

3.2.1.14. 농어촌특별세법¹⁷⁾중 수산 관련 사항

(1)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토지세 등(이 법에서 ‘本稅’)의 당해 각 세법에 의한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 부과(농특세법 제2조 2항: 과세대상)

(2) 농특세 과세대상 稅目(本稅)¹⁸⁾을 납부하는 자와 과세대상 세목의 감면¹⁹⁾을 받는 자 등²⁰⁾에게 농특세 부과(농특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6) ‘關稅等’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포함(특례법 제2조).

17)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농특세법 제1조).

18) ① 농특세법 제5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의 경우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 등, ② 농특세법 제5조 1항 2호의 농특세의 경우는 소득세, ③ 동 3호의 농특세는 법인세, ④ 동 4호의 농특세는 특별소비세, ⑤ 동 5호의 농특세는 증권거래세, ⑥ 동 6호의 농특세는 취득세, ⑦ 동 7호의 농특세는 마권세, ⑧ 동 8호의 농특세는 종합토지세 등이 本稅이다.

19) ‘減免’이라 함은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발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등 포함) 등에 대한 일반 세법상 '특정조세의 감면'에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 1호: 농특세의 비과세). 단, '수협중앙회 등이 고유의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액(지방세법 제110조의 4. 2항 1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조항은 1994년 12월에 삭제됨

(4) 농특세법 제5조 제1항(농특세의 과표별 세율(표 2-7) 등

표 2-7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號 別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감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세액(2호의 경우는 제외)	20/100
2	조감법 제81조 1항 1호 내지 3호, 5호 내지 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10/100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표액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100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 소비세액 : 가. 동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나. '가' 목 이외의 경우	30/100 10/100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5/10,000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10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 마권세액	20/10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00만원초과 금액의 10/100 50만원+1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

자료: 농특세법 제5조 1항.

- 20) ①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被減免者, ② 법인세 課 標 5억원 초과 내국법인, ③ 고급모피와 제품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고급가구 특수화장품 골프장입장행위 등 특소세납세자, ④ 증권거래세 납세자, ⑤ 취득세 馬券稅 납세자, ⑥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종합토지세 납세자 등(농특세법 제3조).

3.2.2. 지방세(법)중 수산 관련 법규(조항)

3.2.2.1. 취득세

- (1) 선박 어업권²¹⁾ 등의 취득²²⁾에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제105 1항)
- (2) 선박, 어업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수산업법, 선박법상의 등기·등록을 미필한 경우도 사실상 취득에는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제 105 조 2항)
- (3) 선박, 어어권 등의 相續 증여 등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10조)
- (4) 천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복구 어선(피해어선 대체를 위한 파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新造 또는 修繕으로 취득한 어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108조)
- (5)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 262조 2항)
- (6)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50% 경감(지방세법 제266조 1항)
- (7) 수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50% 경감(지방세법 제266조 3항)
- (8) 농산물유통공사 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266조 5항)
- (9)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연결한 연안이 속하는 구 시 읍면지역에 거주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중 1인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어선과 기소유 어선의

21) 어업권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의미한다.

22)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원시취득, 승계취득, 기타 유상 무상의 취득을 의미한다.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신규취득 어장과 기소유 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ha 이내인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26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22조 1항 및 2항)

(10)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267조 2항)

3.2.2.2. 등록세

(1) 선박 어업권 등 재산권의 취득 이전 소멸 등의 등기에 등록세 부과(지방세법 제124조)

(2) 수협중앙회 등이 영어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융자담보물의 등기에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7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4호)

(3) 천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복구 어선(피해어선 대체를 위한 파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新造 또는 修繕으로 취득한 어선)의 등록에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7조의 2조)

(4) 선박 등기의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선박가액의 5/100 등(지방세법 제132조 1항)

(5) 20톤 미만 선박의 등록에 0.2/1,000 저율 과세(지방세법 제134조)

(6)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262조 2항)

(7) 어업권 등록세율, 어업권의 이전: 상속에는 매 1건당 3,000원,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에는 매 1건당 12,000원 등(지방세법 제142조)

(8)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등록세 50% 경감(지방세법 제266조 1항)

(9) 수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에 등록세 50% 경감(지방세법 제266조 3항)

(10) 농산물유통공사 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6조 5항)

(11)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에 거주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중 1인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어선과 기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신규취득 어장과 기소유 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ha 이내인 경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22조 1항 및 2항)

3.2.2.3. 면허²³⁾세

(1) 어업권, 면허어업 등에 면허세 부과(지방세법 제16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 '별표' 등)

(2) 선박 대여업, 수산제조업, 수산물의 포장, 용기제조, 판매업에 면허세 부과(지방세법 제16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 별표, 면허세 부과대상 제1종 8호, 77호 등)

(3) 수산물시장 개설(농축산시장 포함)에 면허세 부과(지방세법 제161조, 과세대상 제4종 70호)

(4) 어업권 면허중 '설정'²⁴⁾을 제외한 등록에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63조 2항 3호)

3.2.2.4.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 시·군·구에 선적장 등을 둔 어선 등 船舶에 재산세 과세(지방세법 제181조)

(2) 고급선박 이외의 선박(어선)에의 재산세 세율: 선박가액의

23) 면허란 면허, 허가, 기타 명칭 여하 불문, 특정한 영업, 설비, 행위 등에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이다(지방세법 제160조 1항).

24) 면허어업의 경우, 최초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3/1000(지방세법 제188조 1항)

(3)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지방세법 제266조 1항)

(4) 수협중앙회 등이 구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지방세법 제266조 3항)

(5) 수협조합(중앙회 제외)이 구관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지방세법 제266조 4항)

(6) 농산물유통공사 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지방세법 제266조 5항)

(7) 기타 수산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지방세법 제234조의 8)

3.2.2.5. 주민세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에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수산부문 소득자(개인 및 법인)에게 소득할 주민세 부과(지방세법 제 173조 1항 및 2항)

(2) 시장·군수에 대한 주민세 표준세율 50%범위내 加減調整權 인정(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3.2.2.6. 사업소세

(1)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수산법인의 어업 등)²⁵⁾을 하는 장소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지방세법 제245조의 2, 1항 1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

25)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수산업 포함, 단, 축산업 등 제외)을 말한다.

(2) 수산업(농림축산업 共히)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제267조 3항)

3.2.2.7. 공동시설세

(1) 어선 등 선박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지방세법 제240조 1항 및 2항, 법 제180조 및 제104조 5호 등)

(2) 고급선박 이외의 어선에 대한 공동시설세 세율: 선박가액의 3/1,000(지방세법 제242조, 제188조 1항 3호)

3.2.2.8. 도시계획세

(1) 선박,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자와 지적법상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액을 과표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방세법 제235조의 2)

(2) 수산법인의 수익사업(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방세법 제238조의 2, 법 제183조, 법 제184조 등)

3.2.3. 조세감면규제법(절차법)중 수산 관련 법규

3.2.3.1. 조세감면규제법(국세)중 수산 관련 조항

(1) 수산부문에서 외화획득사업(수출품의 생산, 임가공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는 당해 과세년도의 외화수입금액에 1/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100 상당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을 인정(조감법 제16조 1항: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2) 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수산인등

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는 당해 과세년도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득금액계산에 손금산입을 인정(법 제17조 1항: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3) 수산업 등(제조업 등 포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일정한 事業讓受渡 방법²⁶⁾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적용²⁷⁾(법 제32조: 法人轉換에 대한 양도소득세 減免)

(4)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다른 합리화 대상기업에 양도하거나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50/100상당 세액 감면(법 제35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資産讓受渡에 대한 조세특례)

(5) 금융기관이 합리화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100 상당 세액 감면(법 제38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6) 조세감면규제법 제35~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 기업은

26) 여기서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7)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라 함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농어가부업 또는 농수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함(법 제39조: 합리화 대상기업)

(7)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 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투자준비금을 損金으로 계상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의 15/100 상당액의 범위내 손금산입(법 제48조: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의 損金算入)

(8) 1991년말 현재 어선, 어업권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중 18세 이상 재혼 자영어민 또는 영어계획자에게 1996년말까지 어선, 어업권 등 증여시 증여세 면제(법 제57조 1항)

(9)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을 과표로 하여 10/100의 저율세율을 적용. 단, 기타법인에 대하여는 과표 1억원 이하에 18/100, 1억원 초과에 25/100 등의 세율을 적용함(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조합(어촌계포함)이 조합상호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에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법 제75조 제1항: 농림수축산협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11) 수협조합 등 위의 법인 등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 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상당 세액 감면(법 제75조 제2항)

(1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000만원 이하의 預託金 또는 1,000만원 이하의 出資金의 이자 또는 배당금 등의 소득에 소득세 비과세(법 제81조: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13) 국내에 주소를 둔 수산업자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家業: 수산업, 농업, 축산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과세가액(상속세법 제4조 1항)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20/100 상당 금액을 차감(조감법 제9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1항, 시행규칙 제45조: 가업의 범위 등)

(14) 연근해, 내수면 어업용으로 수협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水産機資材 공급에 부가가치세 零稅率 適用(법 제99조 5호)

(15) 연근해와 연안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과 수협 및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²⁸⁾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면제(법 제100조 1항 2호, 동법 시행령 96조 제2항 1호 및 2호, 시행규칙 제50조 1항 및 2항)

(16) 연근해, 연안어업용 선박, 어민과 수협 및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용 석유류에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법 제107조 1호)

(17)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여 등록되어, 단위농협에 신고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면제(법 제100조 제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2항 2호, 시행규칙 제50조 2항)

(18) 수협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나 계원 등이 수협중앙회 등으로 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등에 인지세 면제(법 제111조 5호)

(19) 수협 및 어촌계 등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법 제111조 6호)

28) 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 건조시설, 미역 자숙 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 등.

(20) 수산물 등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소득을 현저히 증대시킬수 있는 기업의 합병²⁹⁾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법 제113조 제1항)

(21) 수산업 등(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포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조감법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취득세 면제(법 제114조)

29) '합병'이란 법 제39조 제1항 1~5호 해당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합병과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합병 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을 말한다.

제 3 장

수산조세의 감면 현황

1. 조세감면의 법령과 유형

1. 1. 조세감면 법령

현행 세법상 조세의 감면¹⁾을 규정하는 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다수 국세를 규정하는 국세법과 그 시행령,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조세감면 규제법 및 그 시행령 등이다

1. 2. 조세감면의 유형

현행 제도상 조세의 ‘減免’은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1) 조세에 대한 감면의 일반적 개념은 조세의 부담을 단순히 납세과정에서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뜻으로 통용되나, 이 연구에서는 비과세, 면세, 일부경감,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례세율, 영세율 적용, 세액환급 등 현행 세법이 규정한 일체의 경감세 내지 면세제도를 지칭한다.

등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환급, 특례세율 및 零稅率制度 등의 유형을 취한다.

수산 조세의 감면유형을 관련 법령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2.1. 비과세제도²⁾

(1) 600만원 이하 어민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 5조 3호 ‘나’ 목,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2) 수협중앙회 등이 어민에게 영어자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융자 담보물의 등기에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7조 1항 5호)

1.2.2. 소득공제제도

(1)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복지후생성 급여에 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조 4호 ‘파’ 목,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및 2항)

(2) 수협 공제사업용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과세금액 계산상 損金算入을 인정(법인세법 제12조).

1.2.3. 세액(전액)면제제도³⁾

(1) 수협, 수협중앙회, 어촌계 등이 상호간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조감법 제75조 1항)

2)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과세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사항이 따르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면세(세액면제)제도와 같다.

3)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과세제도와 같다. 그러나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즉, 국가 등이 일정한 정치·경제·사회적 목적과 사유에 따라 과세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어업용 석유류로서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 수협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 건조시설, 미역 자숙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감법 제100조 1항 1호, 동법 시행령 96조 2항, 동법 시행규칙 50조 1항)

1.2.4. 세액(일부)경감제도

(1) 금융기관이 합리화 대상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조감법 제38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2) 수협조합 등 위의 법인 등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 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중전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상당 세액 감면(조감법 제75조 제2항)

1.2.5. 세액공제제도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특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교통세법 제17조 9항)

(2) 교통세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교통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특소세법 제20조 8항)

1.2.6. 특례세율

(1)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기타법인에 대해서(과표 1억원 이하에는 과표의 18/100, 1억원 초과에

는 과표의 25/100)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조감법 제59조 1항: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축임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을 과표로 하여 10/100의 세율을 적용(조감법 제60조 2항 4호: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

1.2.7. 零稅率制度

(1)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 어촌계 및 수협 등에 공급하는 漁具 등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5호)

(2)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1.2.8. 세액환급제도

(1) 휘발유 등(제4종 제2류의 과세물품)이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비료, 농약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은 환급, 앞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특별소비세법 제20조 2항 4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2) 교통세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교통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특소세법 제20조 8항)

1.2.9. 기타제도

(1) 수산 관련 非營利 內國法人(민법 제32조,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

적을 가진 법인 등)은 수산업 등의 당해사업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제1조)

(2) 수산업 등(제조업 등 포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일정한 事業讓受渡 방법⁵⁾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⁶⁾(조감법 제32조: 法人轉換에 대한 양도소득세 減免)

2. 수산 국세의 주요 세목별 감면 현황

제1절 2항 ‘조세감면의 유형’에 예시한 것 등을 포함하여 현행 수산 관련 주요 감면세 현황을 세목별로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2. 1.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1) 농어민이 부업으로 양어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600만원 이내의

4) ‘수산업 등의 당해사업’이라 함은 수산업을 포함하여 축산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5) 여기서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라 함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소득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5조 3호 ‘나’目,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2) 연근해 어선원이 지급받는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제4호 ‘파’목)와 야간근로 및 연장시간근로 지급받는 급여(제4호 ‘하’목)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12조의 3)

(3) 수산 관련 非營利 內國法人(민법 제32조,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 가진 법인 등)은 수산업 등의 당해사업⁷⁾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제1조)

(4) 수협 공제사업용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과세금액 계산상 損金算入을 인정한다(법인세법 제12조 1항)

(5) 등기된 부동산중 선박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⁸⁾(소득세법 제19조 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

(6)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조감법 제6조 1항)

(7) 수산부문에서 외화획득사업(수출품의 생산, 임가공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는 당해 과세년도의 외화수입금액에 1/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100 상당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을 인정한다(조감법 제16조 1항: 수출손실준비

7) ‘수산업 등의 당해사업’이라 함은 수산업을 포함하여 축산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8) 부동산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의 손금산입)

(8) 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수산인 등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는 당해 과세년도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득금액계산에 손금산입을 인정한다(조감법 제17조 1항: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9) 수산업 등(제조업등 포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일정한 事業讓受渡 방법⁹⁾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¹⁰⁾(조감법 제32조: 法人轉換에 대한 양도소득세 減免)

(10)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 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을 損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15/100 상당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다(조감법 제48조: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의 損金算入)

(11)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등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에는

9) 여기서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0)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라 함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기타법인에 대해서(과표 1억원 이하에는 과표의 18/100, 1억원 초과에는 과표의 25/100)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조감법 제59조 1항: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축임업협동조합(산림계 포함) 등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표로 하여 10/100의 세율을 적용한다(조감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13)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000만원 이하의 預託金 또는 1,000만원 이하의 出資金의 이자 또는 배당금 등의 소득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조감법 제81조: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14) 수협 및 수협중앙회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流通子會社에 현물출자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75조 3항)

(15)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감법 제35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資産 讓受渡에 대한 조세특례)

(가) 다른 합리화 대상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나)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와 기타 등

(16) 금융기관이 합리화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감법 제38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17)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협조합(어촌계포함)이 조합 상호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에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75조 제1항: 농림수축산

협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18) 수협조합 등 위의 법인 등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 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조감법 제75조 제2항)

2.2. 상속세와 증여세

(1) 상속세의 과세가액 중에서 1억원을 기초공제하며(상속세법 제5조), 그밖에 인적공제로서, ① 배우자공제(1,200만원×결혼년수+1억원), ② 자녀공제(2,000만원×자녀수), ③ 미성년자공제(3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④ 노령자공제(3,000만원×노령자數. 단, 男60세, 女55세), ⑤ 장애자공제(300만원×75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등이 있다¹¹⁾. 단, 위의 ①과 ⑤, ②와 ③이 겹치는 경우 등에는 각각 2가지를 합산하여 공제한다(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2) 국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과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장 구역 99,000제곱미터 이내의 어업권(수산업법상 공동어시장 제외)에 대하여는 상속공제한다(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5호 및 6호: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3) 선박, 어장 등의 증여에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300만원×결혼연수+3,0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에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에 5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4) 1991년말 현재 어선, 어업권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11) 단, 그중에서 ①과 ⑤, 또는 ②와 ③이 겹치는 경우 등에는 각각 2가지를 합산하여 공제한다(상속세법 제11조).

및 배우자, 형제자매중 18세 이상 재혼 자영어민 또는 영어계획자에게 1996년 말까지 어선, 어업권 등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 57조 1항)

2.3. 부가가치세¹²⁾

(1)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의 외국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1호,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3) 食用에 공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食用에 공하지 않는 수산물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4) 食用에 공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 식료품으로서 앞의 제2장(표 2-3)에 명시된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12))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중 免稅는 당해 면세대상의 거래단계에서 산출된 세액만 납부가 면제되고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零稅率適用은 당해 면세대상의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유통단계에서 轉嫁되어 온 매입세액까지도 완전히 환급해주는 것이다. 전자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화(면세대상)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초생활품, 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생산요소 용역, 근로와 유사한 인적 용역의 공급 등을 대상으로 한다. 후자는 수출하는 재화나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등의 외국항행 용역,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등에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5) 국내산 수산물을 외국에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기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6) 한국어선협회의 어선점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4호)

(7)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 등에는 부가가치세의 零稅率을 적용한다(농림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제3조 6항,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

(8)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협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漁具 등 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零稅率을 적용한다(조감법 제99조 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9) 농어업용 석유류로서 다음의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시행령 제96조 제2항 1호: 조감법 제100조 제1항 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 수협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10) 어업용 석유류로서, ①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② 어민, 수협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로서 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 건조시설, 미역 자숙 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에 한하여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100조 제1항 2호, 시행령

제96조 제2항 1호,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11)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 어업용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되어, 단위농협에 신고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100조 제1항 2호, 시행령 제96조 제2항 2호,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2.4.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簡易稅率을 적용하는 물품)과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건등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특별소비세법 제2조)

(2) 어업용 석유류로서, ①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② 어민, 수협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로서 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 건조시설, 미역 자숙 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에 한하여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107조, 시행령 제96조 제2항 1호,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3) 휘발유 등(제4종 제2류의 과세물품)이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비료 농약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고, 앞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다(특별소비세법 제20조 2항 4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4) 교통세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교통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한다(특소세법 제20조 8항)

(5) 과세물품이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등은 교통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면 이를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다(교

통세법 제17조 제2항 4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6)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특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한다(교통세법 제17조 9항)

(7)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등(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및 제2호규정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교통세법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適用排除)

2.5. 인지세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111조: 인지세의 면제)

(1)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漁村契員 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3,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어음계약서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등이 작성하는 그 조합원 또는 계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3) 어민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 등과 수산물의 출하 판매, 가공, 보관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등

2.6. 교육세

어선용, 기타 수산업용 유류(특소세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 2류의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자에게는 교육세를 비과세한다(교육세법 제3조 2호)

2.7. 관세와 임시수입부가세

(1) 수산양식 종자(양식용 실뱀장어, 종패용 진주조개, 진주 양식용 핵 및 종패용 굴 치패 등)의 수입에 관세를 감면한다(관세법 제28조의 6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2)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수입 수산물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조정관세율을 적용한다(관세법 제12조의 2 제1항 4호)

(3) 제조된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는 그로부터 소급하여 1년 6개월내에 당해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¹³⁾(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4)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제조 가공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에 제공되는 비율을 참작하여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동특례법 제13조 1항)

2.8. 농어촌특별세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수축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와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등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감면세 중에서 특정조세의 감면¹⁴⁾분에는 농특세를 비과세한다(표 3-1)(농특세법 제4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표 3-1 농특세에서의 '특정조세의 감면' 내용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감법 제52조)
(b)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세액감면(조감법 제53조)
(c)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조감법 제55조)

13) 이 법에서 '還給'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데에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특례법 제2조 제5항).

14) 그 '특정 조세의 감면'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계속)

- (d)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감법 제56조)
- (e) 공공법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0/100 세율 적용(조감법 제59조 제1항 1호)
- (f) 제1호 이외의 법인에게는 과표 3억원 이하에 18/100, 과표 3억원 초과에 5,4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100 세율 적용(조감법 제59조 제1항 2호)
- (g)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감법 제63조)
- (h)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감법 제70조)
- (i)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조감법 제72조)
- (j)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감법 제75조)
 - ㉠ 농수축협조합 및 동 중앙회 등이 상호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제1항)
 - ㉡ 농수축협 및 중앙회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 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제2항: 조감법 제71조 제1항 준용)
 -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해당 세액감면
 - 당해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課稅移延
- (k)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감법 제96조)
- (l)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감법 제97조)
- (m)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 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경감(제1항 제2호)(조감법 제112조:관세의 경감)
- (n) 특정물품 관세 감면세(관세법 제28조의 6)
 - ㉠ 동식물의 번식 양식 및 종자 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1항 제7호)
 - ㉡ 우리 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採捕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 나라 선박에서 제조 가공된 것 포함)과 우리 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채포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13호)

표 3-1(계속)

- (o) 용도 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7조)
- ㉠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취득에 취득세 비과세(제3호)
 - ㉡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을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의 취득에 취득세 비과세(제7호)
- (p) 지붕 개량을 위한 改築 기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8조)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 지붕 개량을 위하여 초가건물을 瓦家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한 개축(제2호)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농지 취득(단, 취득후 2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면 추징)(3호)
 - 출원에 의한 광업권 및 漁業權의 취득(4호)
- (q) 취득세의 과세 면제(지방세법 제110조의 3)
- ㉣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면제(제1항 1호)
 - ㉤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취득세 면제(제20호)
 - ㉥ 기타 단체의 직접 사용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 면제(제7호 제9호: 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함, 동조 제2항 제8호 제9호 및 제18호 등)
- (r) 취득세의 세액감면(지방세법 제110조의 4)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의 정상세율(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50/100을 감면(제1항 제13호)
 - ㉧ 기타 단체의 직접 사용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액 감면(제12호 제14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 (s) 등록세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27조)
- ㉨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등록에 등록세 비과세(제1항 제3호)
 -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제5호)
- (t) 용도 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등기(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 ㉪ 수협중앙회 등이 농어민에게 영농 영어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등록세 비과세(제4호)
- (u) 등록세 과세 감면(지방세법 제128조의 2)
- ㉫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그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면제(제1항)

표 3-1(계속)

(v) 등록세의 세액감면(지방세법 제128조의 3)

- ㉠ 수협중앙회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의 50/100를 감면한다(제1항: 제110조의 4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의 법인에 한함)
- ㉡ 수협중앙회 등이 購販事業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소정 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50/100을 감면한다(제2항 제1호)
- ㉢ 농어민후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등기하는 농지에는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31조 소정 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50/100을 감면한다(제6호)

(w)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에 의한 감면 등

자료: 농특세법 제4조.

3. 수산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감면 현황

3. 1.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

(1) 선박, 어어권 등의 相續 증여 등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110조)

(2) 天災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복구 어선(피해어선 대체를 위한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新造 또는 修繕으로 취득한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108조)

(3) 수협 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어자금, 영농, 축산, 산림개발 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등록세를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127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4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4)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設定을 제외한’ 등록에는 신규 면허에 한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163조 2항 3호)

(5)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2조 2항)

(6)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한다(지방세법 제266조 1항)

(7) 수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지방세법 제266조 3항)

(8)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연결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에 거주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중 1인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어선과 기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신규취득 어장과 기소유 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ha 이내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22조 1항 및 2항)

(9)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7조 2항)

(10) 수산물 등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 소득을 현저히 증대시킬수 있는 기업의 합병¹⁵⁾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113조 제1항 2호 및 4호, 조감법 제39조 1항 5호, 동법시행령 제104조: 등록세의 면제 등)

(11)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

15) ‘합병’이란 법 제39조 제1항 1호~5호 해당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내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합병과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합병 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을 말한다.

16) 법인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¹⁶⁾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의 50/100상당액을 감면한다(조감법 제113조 3항)

(12) 수산업 등(제조업, 건설업, 운송업도 포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조감법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114조 1항 3호)

3.2.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2조 2항)

(2) 수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한다(지방세법 제266조 3항)

(3) 수협조합(중앙회 제외)이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6조 4항)

(4)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지방세법 제266조 1항)

3.3. 주민세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를 표준세율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76조 3항)

3.4. 사업소세와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

(1)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지방세법 시행령 제78

17)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라 함은 축산업 이외의 농수산업을 말한다.

조의 2)¹⁷⁾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소에 한하여 재산활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1호 단서조항)

(2) 수산업(농림축산업 포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7조 3항)

(3)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2조 2항)

제 4 장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개선 방향

1. 수산 감면세제도 개선의 전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약 20% 수준으로서 복지지향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간 낮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¹⁾. 한국이 만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국민의 담세율은 앞으로도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현 수준에서 멈추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조세정책은 그 양자중 어느 편을 지향하는지 다소 모호하다. 수산조세의 감면제도도 그러한 측면을 분명히 밝혀 놓고 세계 전반적 개선속에서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민의 평균 담세율과는 거의 관계없이 단지, 우리의 세정이 복지지향 성향에 비중을 더 두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행 세법의 범위내에서 감면세

1) 선진국중 ‘福祉指向’의 프랑스는 25.1%, 독일은 24.2% 수준이며, ‘작은 정부지향’의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5%와 19.6% 수준 등이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수산조세제도 개선의 大前提는, 그러한 한정된 범위내에서 앞의 序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다가 온 개방화 시대에 앞으로 있을 OECD 가입 이후를 예상하면서 수산업 생산활동에 요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수산업의 채산성을 높여 어민을 비롯한 다수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수산 감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위의 전제하에 각 세목별로 수산 관련 주요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부가가치세

(1) 水産機資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다²⁾. 현행 어업용 기자재중 어망, 로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표 4-1), 어로용 기기 및 장비, 어선항해, 어선수리용역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부과된다.

(가)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영어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표 4-2),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 수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³⁾.

(나)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

2) 특히, 연근해 어선용 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3) 수협중앙회에 의하면 1994년에 이들 영세율 미적용 수산기자재의 거래액 규모는 1,650억원이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약 1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되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 어민이 종사하는 연근해 어업에 제공 되는 기기, 장비 등이 15개 품목으로 국한됨에 따라 어업 내부에서도 원양어업과 연근해 어업간에 형평을 잃고 있다.

따라서 어민의 영어비 부담 경감,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업의 원가 절감에 의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어로장비, 포장상자 등을 포함하여 57개종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4-1 수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확대 대상품목

현 행 품 목*	제 외 된 품 목(요 추가품목)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발장, 해녀용잠수복 등(물안경, 태와),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 총톤수 20톤 미만어업용 선박, 선박용 무전기	기관, 어군탐지기, 나침반, 구명동의, 구명벌, 선동, 호중, 기적, 닛, 축전지, 선외기, 방향탐지기, 로오란, 레이더, 수온계, 비디오프로타, 프린터, 위성항법장치, 냉동기, 샤클, 코스, 코팅사, 잠수용컴프레서, 전개판, 잠수용호스, 넷트레코드, 보빙, 페인트, 이료, 얼음, 수산물출하용포장상자, 양식용식품, 양어용수차(산소 공급용), 양어용양수기(지하수 공급용), 양어용부로와(산소 공급용), 양어장용폴리에틸렌비닐(보온용), 양어장용 파이프(보온용), 패각 분쇄기, 기상팩시밀리, 항목, 껍사, 진주용 핵
총 15개 품목	총 42개 품목

* 농림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청.

표 4-2 영세율 미적용 영어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부담 추정액 규모, 1994

영어 기자재 품목 유별	거래 실적	부가가치세부담액(억원)
어선항해 및 어로용기와 장비	451	41
수산물 포장용 상자	175	16
기타 어업용 생산기자재	1,024	93
계	1,650	150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2) 해면 및 내수면 육상수조식양식장 등 육상양식어업용 시설과 수산물 종묘 생산시설, 새우 건조 자숙시설 등에 사용하는⁴⁾ 유류(BC, 경유 등)에는 부가가치세 등 비면제⁵⁾로 육상양식 어민의 어업경영비 부담이 무겁다⁶⁾(표 4-3).

연근해어선 및 내수면 어선, 나잠어민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어민 어촌계 수협 직영 수산물 생산기초시설⁷⁾에 공급하는 유류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유)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 등}를 면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조감법 100조 1항 1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50조, 조감법 제107조, 시행령 제96조 제2항 1호,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WTO체제 출범 이후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활어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어류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여기에도 감면세가 요청된다.

따라서 해면 육상양식어업용 시설과 내수면 양식어업용 시설, 수산물 종묘 생산시설 및 새우 건조 자숙시설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등 포함)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광어, 뱀장어, 메기, 용돔 등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연중 6개월간 수온 20°C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면제대상인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범위에서 내수면양식장 등 제외.

6) 수협중앙회에 의하면 1995년 3월말 현재로 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은 전국적으로 973개소이고, 유류 소요량은 BC, 경유, 등유, 휘발유 등을 포함하여 총 365,168D/H,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담세액은 약 2,220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7) 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 건조시설, 미역 자숙 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 등.

표 4-3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현황, 연간 유류 소요량 및 담세액 추정

구 분	개 소	유류소요량(D/H)	담세액(100만원)
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477	105,408	1,017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435	239,760	1,015*
수산물 종묘 생산시설	51	15,000	140
새우 건조 자숙시설	10	5,000	48
계	973	365,168	2,220

* 유류소요량이 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보다 현저히 많은데도(239,760D/H) 담세액이 오히려 적은 것은(1,015백만원) 유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BC, 등유, 휘발유 및 경유 등).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2.2.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 해면 및 내수면 육상수조식양식장 등 육상양식어업용 시설과 수산물 종묘 생산시설, 새우 건조 자숙시설 등에 사용하는 유류(BC, 경유 등)에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어 육상양식 어민의 부담이 상존한다.

그러나 연근해 어선 및 내수면 어선, 나잠어민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어민, 어촌계, 수협 직영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유류에는 특별소비세(등유)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 등은 면제하고 있다(조감법 제107조 1항, 시행령 제96조 제2항 1호,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연안어장의 어족자원 고갈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요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이들 양식장에도 면세유 공급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해수면 육상양식어업용 시설과 내수면 양식어업용 시설, 수산물 종묘 생산시설 및 새우 건조 자

숙시설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도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휘발유 등 교통세 과세물품이 원양 어선에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나, 연근해 어선에 사용된 경우는 환급조항이 없다.

휘발유 등 교통세 과세물품이 연근해 어선에 사용되는 경우도 원양어선에 사용된 경우와 같이 교통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 연근해 어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나, 원양 어업과 연근해 어업간의 과세 형평화에도 바람직하다.

2.3. 상속세와 증여세

영어규모 확대, 후계자 육성 등을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선 등의 가족 및 친족간 移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르는 조세 부담이 어선 등의 어민 가족간 이동을 저해한다.

정부에서는 WTO체제 출범 및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어업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전업어가를 육성하고, 어선과 어업권 등 경영자산의 자영어민 및 영어희망자에 일괄이전을 유도하며, 어민후계자 양성 등에 국고 보조 및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⁸⁾(표 4-4),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

현행 제도는 1991년말 현재 어선, 어업권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중 18세 이상의 재혼 자영어민 또는 영어계획자에게 1996년 말까지 어선, 어업권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조감법 제57조), 앞으로는 이 조항을 무기한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수산업에 관한 특별상속 공제규모도 현행의 20톤 미만의 어선과

8) 수협중앙회에 의하면 1995년의 어민후계자 육성 예정인원은 746명, 소요지원 추정액은 약 150억원 수준이다.

표 4-4 어민후계자 육성 및 지원 실적

구 분	1981~90년	1991	1992	1993	1994	1995*	합 계
인원(명)	4,447	150	1,000	994	641	746	7,978
지 원 액 (억 원)	343	20	150	149	120	150	932

* 1995년의 인원과 지원액은 추정치임.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99,000제곱미터 이내의 어장구역 어업권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현저히 확대하여야 한다.

3.4. 취득세와 등록세

(1) WTO체제 출범 및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업경영규모의 확대, 어민후계자 육성 등이 요청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기존 어민이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어선이나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267조 1항: 자연어민에 대한 감면), 어민후계자 등이 새로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선이나 어업권을 취득할 때는 그러한 감면조항이 없어 어민후계자의 육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의하면 1995년까지 약 8,000명의 어민후계자가 육성되었고, 그에 대한 지원액은 약 930억원에 이른다(표 4-4).

따라서 어민후계자 등이 새로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선, 어업권 등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50% 감면할 것을 요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등에 50%의 등록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 관련 기업의 창업에는 등록세감면 특례제도가 미비된 상태이다(조감법 제113조 2항). 수산기업의 창업에도 등록세 감면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등에는 등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수산 관련 기업의 창업에는 그러한 등록세 감면조항이 없다(조감법 제 113조 제1항: 등록세의 면제 등). 따라서 수산 중소기업의 창업에도 등록세의 50/100 상당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4)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영농 종사자나 농민후계자 등이 자경을 목적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50% 경감하나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민, 어업후계자가 어업을 목적으로 어선이나 어업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부과한다.

따라서 어업후계자가 어업목적으로 하는 어선, 어업권 등의 취득에도 농민후계자가 자경목적으로 농지(전답)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50% 경감하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과 관련 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경감 내지 면제하여야 한다.

2.5. 관 세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 제조용 부분품⁹⁾ 및 기타 器機製造用 기자재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조감법 제112조 2항: 관세의 경감 (표 4-5)), 어선 및 수산기계 부분품 등은 관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농수산업간 과세 형평화를 위해서는 수산업 기계 제조용 부분품에도 농업기계 제조용 부분품과 같이 관세의 경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9)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중 상공부 장관이 농업기계 제조용으로
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임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

표 4-5 관세 경감대상 농기계 부분품

품목 순위	품목
1	농업용 트랙터 제조용 부분품
2	콤바인 제조용 부분품
3	이앙기 제조용 부분품
4	동력운반차 제조용 부분품
5	농업용 엔진 부분품(동력 경운기, 동력 분무기, 동력 살분무기, 양수기, 이앙기 및 바인더 제조용 로울러 베어링)

자료: 조감법 제112조 1항, '관세경감규칙', 제1조 별표.

2.6.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1) 수산부문 외화획득사업자의 수출손실준비금損金算入(조감법 제16조)¹⁰⁾, 수산수출업자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제17조)¹¹⁾ 인정 등 UR협정에 어긋나는 보조형태에 대한 처리문제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표 4-6).

WTO체제하에서 금지되어 있는 수산부문 외화획득사업자와 수산무역업자 등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의 존폐 여부가 문제된다(조감법 제16조, 제17조).

조속한 기간내에 이들 조항을 개편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접 보조형태의 지원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UR 금지보조금.

11) UR 금지보조금.

표 4-6 UR 금지보조금중 수산조세 지원부분

지 원 항 목	지 원 내 용	비 고
○ 수출손실준비금손 금산입(조감법 제 16조)	○ 수산부문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 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화 수익의 일부를 손금산입 인정	존속
○ 해외시장 개척준비 금 손금산입(조감 법 제17조)	○ 수산무역업자의 해외시장개척비용 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화수익의 일부를 손금산입 인정	존속
○ 외화획득사업용 자 산의 특별감가상각 (조감법 제18조)	○ 수산수출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 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불 인정)	1994.12. 삭제

자료: 조세감면규제법 제16~17조 등.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¹²⁾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후 5년간 당 해사업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50/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수산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조감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수산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야한다. 즉, 수산 관련 창업중소기업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100 상당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12)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1항(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 지원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③ 동법 시행령 3조(제조업 이외의 창업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란 광업, 정보처리 컴퓨터업, 기타 창업지원심의회가 정하는 업종(수산업은 없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감법 제7조 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그러나 수산 관련 중소기업 예컨대, 새우통조림제조업 등과 같은 수산물 가공업은 이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산물가공업 등 수산 관련 제조업에도 이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상당의 특별세액을 감면해야 한다.

2.7.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수산 관련 기업의 창업에는 그러한 재산세감면 조항이 없다(조감법 제115조: 재산세의 감면). 수산 관련 중소기업이 창업하면서 당해 사업용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조건으로 50/100 상당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2) 수산업자 등의 수산업 고유업무용 토지에의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 함으로써(누진세율 적용되어) 1/1,00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단일, 저율세율 적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지 등보다 중과세되어(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종합토지세의 세율)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수협 등의 고유업무용 토지에의 종합토지세는 현행 종합 합산과세제에서 농지 등과 같이 분리과세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농지개량조합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나(지방세법 제267조 4항), 어촌계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그러한 면제조항이 없다. 어촌계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2.8. 사업소세

어획과 養殖은 공히 수산활동이므로 어획에 제공하는 인적·물적 설비에 비과세하는(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 사업소세를 수산양식장에 부과함은 형평성을 결한다.

따라서 어획뿐 아니라 수산양식을 포함한 모든 수산업에 제공하는 건축물 등에도 사업소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9. 인지세

어선, 어업권 등의 양도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도 수산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어선, 어업권 등의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경감 내지 면제하여 어선, 어업권 등의 유동을 적절히 조절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0. 면허세

현행은 선박 대여업, 수산제조업, 수산물의 포장, 용기제조, 판매업에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61조 2항, 동법 시행령 124조 별표, 면허세 부과대상 제1종 8호, 77호등), 앞으로 이의 경감 내지 면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11.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 세목 즉, 교육세의 과표가 등록세 특별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 등 다양하므로 교육세의 부과는 수산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수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의 유류세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자에게만 비과세 할 것이 아니라 기타의 교육세 과세대상 세목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액 등에 부과하는 교육세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12. 주민세

수산부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는 수산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수산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만 부과하고, 소득할 주민세(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는 면제함으로써 수산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2. 13. 자산재평가세

어선 등 수산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평가세 감면규정이 없는바, 수산부문 자산재평가세도 경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14. 농어촌특별세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일반 세법상 ‘특정 조세의 감면분(표 3-1)’에 한해서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제4조), 농특세 자체가 궁극적으로 농어민과 농어민조합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것이므로 농어민이나 농어민단체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3. 세법구조 및 기타 행정체계상의 유의점

3. 1. 세법구조의 문제

(1) 현행 조세법령은 구조적으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의 연결 관계가 다단계적으로 길고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해석과 적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 법령 관계를 단순 명료하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법 조항의 중복성 내지 애매모호성이 국민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한다. 예컨대 수협중앙회 등이 어민에게 영어자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7조 1항 5호와 동법 시행령 96조 4호 등에서는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64조 1항에서는 등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첫째 유사한 내용의 것을 세법의 다른 조항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비과세’와 ‘면제’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인 지, 아니면 유사한 것으로 본 것인지가 애매모호하다¹³⁾.

3.2. 행정체계의 문제

현행 수산조세는 전술한 제2장의 (도 2-1) 및 (도 2-2) 등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직간접세 등으로 구분되어 (도 4-1)과 같은 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수산조세가 (도 2-2)와 같이 과세주체(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와 지방세로 대별됨에 따라 그 主管機關은 국세를 관장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지방정부 즉, 市道 내시 郡이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재무부와 내무부가 각각 주관하여 왔다. 조세행정을 그 의사결정과 정책집행과정 등으로 대별하면 재무부와 내무부는 주로 전자의 역할을, 국세청과 市道는 각각 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이 단순히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현업 부문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기관의 여타 기능과도 상호 연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수산조세 관련 행정은 최소한 내무부와 재무부 및 기타 관련 部處인 농림수산부와 수산청 등과 의 부단한 유기적 연결체계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현행 수산조세의 행정체계를 집약하면 (도 2-3)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13) 현행 세법에서는 ‘비과세’와 ‘면제’는 구분하고 있다.

(1) 조세행정은 국세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세에는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은 양자 모두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아직 원년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불가피하기는 하나 조속한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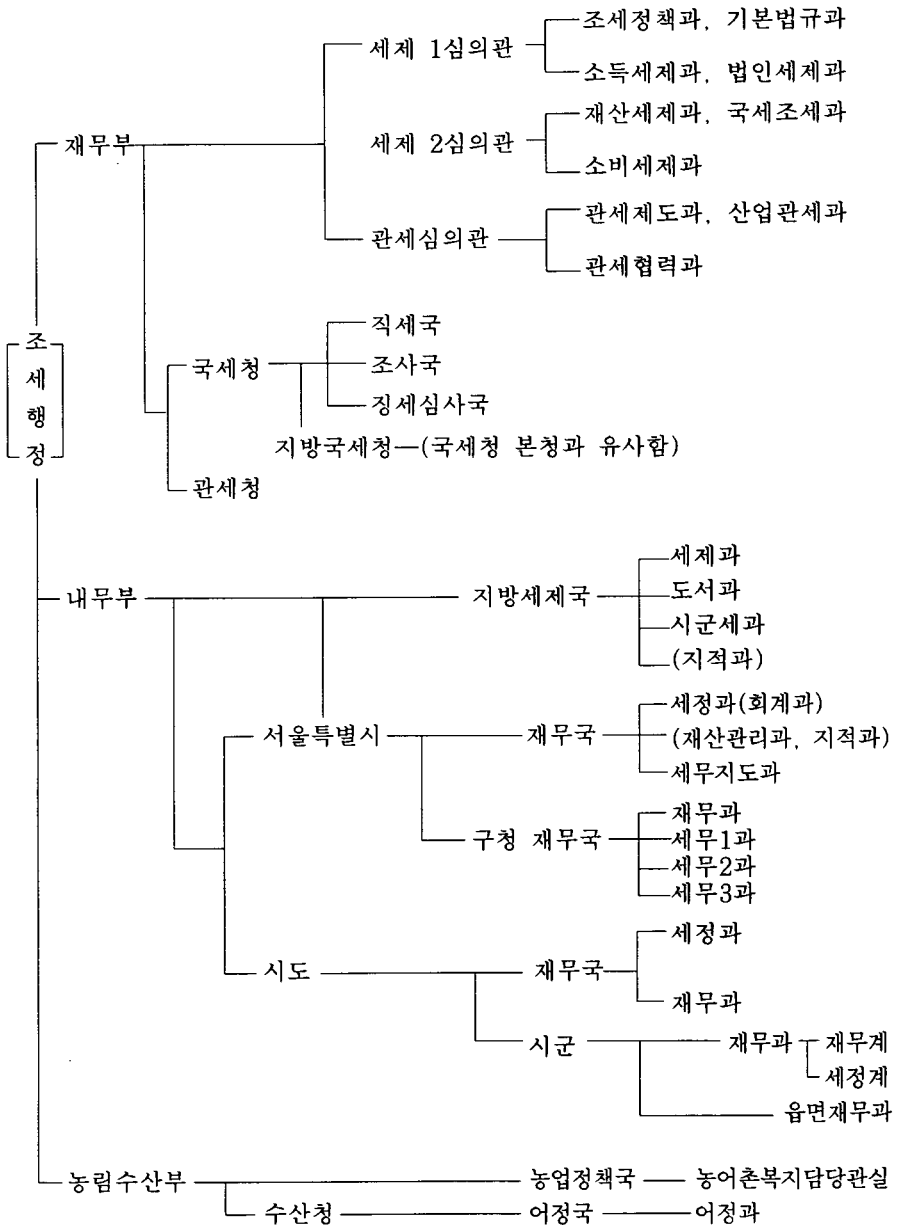
(2) 조세관장 주무부처인 재무부(국세)와 내무부(지방세)의 수산조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의 현실감각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그러한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3)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의 조세 관련 局課도 인력과 전문성면에서 증가하는 조세행정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최소한 全擔 課係 수준의 인력과 예산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¹⁵⁾.

14) 재무부, 내무부 양부 중심의 의사결정이 통례였다.

15) 현재 농림수산부는 농업구조정책국 농어촌복지담당관실 주사급 1명이 여타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세행정을 겸무하는 수준이다.

도 4-1 수산조세의 행정체계와 조직



자료: 정부조직법 및 관련 세법 등에 근거하여 작성함(1995. 8. 31. 현재).

제 5 장

결 론

이 연구는 제2장에서 열거된 수산조세에 관하여 우선 수산인이 경험한 세목별 擔稅의 발생빈도와 부담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세법규정을 점검하면서 감면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 제3장과 제4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담세빈도가 높은 현행 수산 관련 주요 조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와 등록세,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서 감면제도상의 문제점도 비교적 많았으며, 그 밖에 관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지세 등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는 문제점의 규모나 심도면에서 비교적 덜 심각함도 동시에 알게 되었다. 제4장은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의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조세의 법령 및 행정적 측면에서의 보완점도 부수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조세제도가 지니는 속성상 그 자체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간접의 국내외 정치·행정적 여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대외적으로는 이제 겨우 1년째인 WTO체제하에서,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OECD 가입 이후에 있어서의 가변적인 국제무역질서와

대내적으로는 예상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관련된 일련의 여건에 부응하는 대안들이어야 한다. 조세는 다분히 정치적인 산물이므로 세제의 개선은 그러한 현실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수행과정에서 국내 수산업에 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조한 나머지 UR협정에 일부 저촉되는 세제 개선안도 있고, 국내 타산업 부문과의 형평을 결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단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UR협정에 부합하는 세제를 이미 완전히 갖춘 나라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¹⁾, 국내적으로도 세제가 아직은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세제가 빈번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 산업간 형평을 이루는 감면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도 아닐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대부분의 세목은 WTO체제하에서 수산부문에 특별히 불리할 것에 대비하여 그에 대한 감면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그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에 급급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제시된 세목별 감면제도의 개선 방향은 그것만으로도 이 연구가 목적인 바, 우리 나라 수산업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타산업부문에 대한 감면제도가 바뀌거나, 국제적으로 UR협정 등 여건이 감면세 규제 내지 금지조항을 보다 강력히 이행하게 될 때는 국내 수산조세의 감면제도는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현시점에서 '생산과 무역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감면세제도'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

면

부 록

부록 1.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업’의 세부내용

부록 2.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물가공업’의 세부내용

빈

면

부록 1.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업’의 세부내용

대분류 1.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수산업

중분류 13. 수산업

소분류 130 수산업

1301(세분류) 해면어업

130111(세세분류)	저인망	
130112	유자망	유망, 자망
130113	안강망(기선)	
130114	안강망(기타)	분기초망, 봉수망
130115	선망	
130121	트롤	
130122	통발어업	
130123	선인망	
130124	채낚기	
130125	연승	
130126	정치망(대형)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소대망, 팔각망, 죽방염
130127	정치망(소형)	저각망, 삼각망, 호망, 사수망, 기타 건망류, 설망류, 장망류 등
130128	잠수기	
130150	포경	
130190	기타 해면어업	바다에서 미역 김 등 해조류, 진주 진주모패 스폰지 산호 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업(잠수 또는 수도구에

의하여 수산물을 직접 채취 또는 포획하는 활동 포함)

1302 양식업(세분류)

130210(세세분류) 내수면양식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업(식용개구리양식등준용)

13022 패류(투석식)

130222 패류(살포식)

130223 패류(수하식)

130224 해조류

130225 해면어류양식 해면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업(진주양식 포함)

1309 기타 어업(세분류)

130910(세세분류) 내수면어업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업

130920 어업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해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어족부화, 수산동식물 종묘 배양 및 기타 보호서비스활동과 어획물의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어획물 출하준비활동 포함)

130931 어류원시가공
(자가포획어)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 염장 등의 원시가공업

어류원시가공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매입어류) 어촌지역에서의 원시가공업

부록 2.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수산물가공업’의 세부내용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분류 311-312 식료품

세분류 3114 수산물가공

- 311410 수산물통조림 콩치통조림, 고등어, 참치, 조개류 등 통조림
- 311420 수산물냉동품 냉동수산물
- 311430 한천(우무가사리)
- 311440 어육연제품, 어묵, 어육소세지
- 311450 수산물건제품 어패류 및 해조류(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오징어포, 어포 등
- 311460 수산물염장품 젓갈류, 기타 수산물 염장품 등
- 311490 기타 고래고기, 맛김, 조미가공품 등

세분류 3115 동식물성유지

- 311510 동물성유지(어유 및 어간유, 정제고래기름 및 경랍, 우지 등)

세분류 3119 식료품임가공

- 311930 임가공식품냉동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냉동
- 311940 임가공착유동식물성 유지원료의 착유
- 311990 기타 농수산물의 건조, 튀김 등 임가공

참 고 문 헌

- 고석환, 「수산인의 세무대책」, 협동연구사, 1983.
- 김기성, 「농업관련조세제도 연구」, 연구보고 25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 「임업 및 축산관련 조세제도연구」, 연구보고 28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金明淑, 「財産保有課税의 歸着: 財産税의 所得分配效果에 對한 再考察」, 한국조세연구원, 1994.
- 金仁台, “近代 水産稅制에 關한 研究,” 「논문집 第10輯」, 부산수산대학, 1973.
- 김정부, 김기성, 「농지관련 법령 정비연구」, M2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朱尤一의, “수산세제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제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
- 옥영수,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7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朴性快의, “수산물 수입개방이 연안해 어로어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농촌경제」 제1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윤호섭, 「OECD가입과 한국농업」, 연구보고 28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이만우, 「1995년도 세법」, 박영사, 1995.
- 李熙燦의, “어촌지역의 어장이용 관리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7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차병권, 「조세이론」, 박영사, 1971.
- 최세균, 김동민, “개방화에 따른 공핍화 가능성,” 「농촌경제」 제7권 제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국세청, 「소득표준률표」, 1993, 1994.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 ,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課稅對查目錄」, 1993.
-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보고」, 각년도.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 1992.
- 법전출판사, 「세법통람」, 1994, 1995.
-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등.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80.
- 수산청, 「수산통계연보」, 1993.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99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향」, 1994.
- ,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26, 1994.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 연구」, 연구보고 91-13, 1991.
- ,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30호(상업, 무역, 공업).
- 한국조세연구원, 「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199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제발전방향」, 1995.
- 玄岩社, 「農林水産法典」, 1992.
- The Arther Young Tax Guide 1988, Arther Young & Co., Ballantine Books, New York, 1989
- Agricultural taxation under structural adjustment, FA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aper 128, Alexander H. Sarris, University of Athens, Athens, Greece. 1994

빈

면

연구보고 R322

수산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감면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찍은날 1995. 9. 펴낸날 1995. 9.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